

등록번호	행정지원과-7248
등록일자	2016.4.1.
결재일자	2016.4.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총무팀장	행정지원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영준	김백호	김광선	代김광선	조인동	04/04 문석진
협 조		정책기획담당관	임근래		
		규제개혁팀장	이창조		
		주무관	김오녀		
		주무관	김정수		

---

**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 계획**

---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
**서 대 문 구  
행정지원과**

#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「통합방위법」 및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1 관련근거

■ 통합방위법 제5조, 제22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

## 2 개정사유

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[대통령령 제25964호, 2015.01.06., 일부개정]

-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추가

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 반영 [3개 항목]

- 상위법령위반(1건),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(1건), 기타사항(1건)

## 3 주요내용

■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**서울지방보훈청장**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,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비함 (안 제3조)

## ■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 반영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 위임없이 구 조례에서 임의 규정한 심의사항 조문을 삭제 (안 제2조제4호)
-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임의 규정을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개정 (안 제6조제1항)
- 「통합방위법」 제22조제5항에 따른 “취약지역 대비책”은 시·도지사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함한 사항으로 구 조례로 규정한 조문 삭제 (안 제12조)

## 3

### 향후일정

■ 입법예고 : 2016. 4. 6. ~ 4. 26. (20일)

■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 : 2016. 4월

■ 구의회 안건 상정 : 2016. 5월

■ 공포·시행 : 2016. 5월

- 붙임 1. 개정조례안 1부.  
2. 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안) 1부.  
3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부. 끝.